#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0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9.

발 의 자:김성원·김선교·정동만

이종배 • 고동진 • 박충권

서일준 · 김소희 · 구자근

임이자 • 박성훈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, 이들의 희생과 노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. 그러나 현재 부 상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, 이들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, 부상 제대군인은 신체적·정신적 부상으로 인해 의료적 치료, 재활, 직업 복귀 등에 있어 다른 제대군인들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. 또한, 일부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부상 제대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되거나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제대군인의 정의에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,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의료 지원, 재활 서비

스 등 맞춤형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,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었 던 일부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으로써, 지원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, 부상 제대군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자 함(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"부상 제대군인"이란 군 복무 중 발생한 신체적·정신적 부상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까지"를 "제4항까지"로 한다.

④ 부상 제대군인의 의료 지원, 재활 서비스 제공, 직업 재교육 및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3항제2호 중 "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"을 "제대군인"으로 한다.

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상 제대군인의 신체적·정신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감면된 진료비로 진료"를 "진료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

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상 제대군인의 신체적·정신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특화된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①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. "부상 제대군인"이란 군 복무
	중 발생한 신체적 • 정신적 부
	<u>상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~ ③	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부상 제대군인의 의료 지원,
	재활 서비스 제공, 직업 재교육
	및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지원
	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	<u>⑤</u>
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	제4항까지
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	
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	
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	
례로 정할 수 있다.	
제14조(취업지원 등) ①・② (생	제14조(취업지원 등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	③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	
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	

필요하면 진로·직업상담, 취업 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 원을 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전상(戰傷)이나 공상(公傷)을
  입고 전역한 <u>의무복무 제대군</u>
  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
  아니한 사람
- 3. (생략)
- ④ (생략)

제19조(교육지원) ①・② (생 략)

<신 설>

③ (생략)

제20조(의료 지원) ① ~ ③ (생략)

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부장관 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

1. (현행과 같음)
2
제대군인
<u> </u>
3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
ll 19조(교육지원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상
제대군인의 신체적 · 정신적 회
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
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
<u>있다.</u>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∥20조(의료 지원) ① ~ ③ (현행
과 같음)
④

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감면된 진료비로</u>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<u>이 경우</u>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<u>국가가 부담한다.</u>

- 1. · 2. (생략)
- ⑤ (생략)

<신 설>

- - 1. 2. (현행과 같음)
  - ⑤ (현행과 같음)
  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상 제대군인의 신체적·정신적 회 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특화된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